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3일, 금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3일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·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입주
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, 매년 우수관리
단지를 선정·지원하여 모범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주
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대상 사업 추가
가) 공동주택 단지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·개선사업(안 제4조제1항제2호러목)
나)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·개선사업(안 제4조제1항제2호버목 신설)
- 금천구 홈페이지,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지원사업
선정·심의결과 공개 의무화(안 제5조제4항, 안 제5조제5항 신설)
- 이의신청 절차 준용 규정 명시(안 제5조제6항 신설)

- 4)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(안 제7조제5항 신설)
- 5)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(안 제16조 신설)
- 6)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정비 및 추가에 따른 지원비율, 평가기준 변경(안 별표 1)
- 7)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우수관리단지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2) 주요 내용

- 가)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대상 사업 추가
 - 공동주택 단지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·개선사업(안 제4조제1항제2호러목)
 -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·개선사업(안 제4조제1항제2호버목 신설)
- 나) 금천구 홈페이지,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지원사업 선정·심의결과 공개 의무화(안 제5조제4항, 안 제5조제5항 신설)
- 다) 이의신청 절차 준용 규정 명시(안 제5조제6항 신설)
- 라)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(안 제7조제5항 신설)
- 마)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(안 제16조 신설)
- 바)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정비 및 추가에 따른 지원비율, 평가기준 변경(안 별표 1)
- 사)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10조)

3) 검토 의견

-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상위법령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및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임.
-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을 내실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